후대교배종 카놀라 MS8×RF3×RT73

1. 법적근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3조, 제3-2조

2. 심사경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 7조의 2에 따라 위해성심사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간 인공교배에 의해 육종된 후대교배종은 상호작용 유무및 후대교배종의 특성*등을 검토함
- LMO 위해성 심사 접수('14.10.27.) 및 심사 진행

3. 심사결과

- Southern blot 분석결과로부터 단일 이벤트의 유전자들이 각각 안정적으로 후대교배종 MS8×RF3×RT73 카놀라에 유전됨이 확인되었고, 이들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되는 PAT, CP4 EPSPS 및 GOX 단백질들은 해당 모본의 발현량 또는 해당 모본들의 발현량의 합보다 적은 경우가 많으나 도입 유전자간 상호작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glufosinate(글루포시네이트) 및 glyphosate(글리포세이트) 제초제에 대한 내성 실험에 있어서도 제초제내성이 각각의 해당 단일 이벤트와 유사하여 삽입된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발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각종 성분함량과 작물학적 특성평가 결과에 있어서도 비변형 대조품종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형질이 더러 있으나 대체로 비변형 대조품종과 유사하여 도입유전자간의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